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2-013-098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 결 연 월 일 2022. 8. 10.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자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22년 기준) >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1)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20. 7. 6. ~ '20. 12. 3.)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정보주체의 열람청구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신고인의 열람청구요청에 일부 항목에만 응답하고 나머지 항 목에 응답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신고인은 2020년 6월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신고인에 자신이 과 거에 상담사와 통화했던 녹취파일에 대하여 열람청구를 하였다. 신고인은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통하여 열람청구를 하였으며, 열람요구서 내에는 5가지 항목*을 요청하였음

* ①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③ 개인정보 보유 이용 및 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⑤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1) 2020. 8. 5.} 시행된 개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제2항), 법 시행 전 행정안전부가 행한 고시·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제3항)

< 신고인의 민원 본문 >

< 신고인 민원 첨부파일(개인정보 열람요구서) 내 내용 >

2020년 7월 3일, 피신고인은 해당 국민신문고를 상담시 녹음파일에 대한 요청으로 이해하였으며, 신고인에게 녹음파일 열람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안내에 따라 7월 6일 자신의 녹취파일을 열람하였으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등 4가지 항목을 열람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1차 침해신고를 신청하였다.

< 피신고인 답변 >

2020년 8월 7일, 신고인은 1차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열람청구요청서를 첨부하여 5가지 항목에 대해 열람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8월 19일, 피신 고인은 해당 민원을 과거 민원과 동일한 민원이라고 판단하여, 민원처리 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중복 종결처리를 하였고, 신고인은 이에 추 가 침해신고를 하였다.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 신고인의 2차 민원 본문 >

< 피신고인 2차 답변 >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7. 18. ~ 2022. 8.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전부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정보주체의 열람청구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신고인의 요청사항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신고인의 첫 번째 열람청구요청에 피심인은 10일 이내에 신고인이 요 청한 내용 중 하나인 녹취파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나, 첨 부파일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통해 요구한 4가지 항목*에 대하 여는 열람조치를 하지 않았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 피심인이 열람조치하지 않은 4가지 항목 중 3가지(수집목적·보유기간·제3자제공현황)는 피신고인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보호포털에 공개되어있으나, 신고인이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은 공개된 자료가 아님

신고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두 번째 열람청구 요청을 하였으나, 피심인은 요청에 대한 응답 없이 민원 종결처리를 함으로써, 추가 4가지 항목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열람조치를 하지 않았다.

비록 피심인이 신고인이 요청한 주 목적인 녹취파일에 대해 열람조치를 10일 이내에 취한 것은 사실이나, 수집목적 등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에 공개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에게 3가지 항목의 열람방법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은 외부에 공개된 항목이 아님에도 신고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5조 제3항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Ⅳ. 처분 및 결정

가.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위반행위에 따라 같은법 제7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 부과기 준」에 따라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기준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총 600만원을 적용한다.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

이비분이	77 870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터.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0호	600	1,200	2,400
계		600		

나. 과태료의 가중・감경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상태를 모두 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과태료의 감경기준>

기준	감경사유	감경비율
위반 정도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하거나, 사 소한 부주의 또는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해발생이 없 는 경우	기준금액의 50% 이내
조사 협조	1.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 행 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기준금액의 50% 이내
다. 자진 시정 등	2.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기준금액의 40% 이내
	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지는 못 하였으나 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준금액의 30% 이내
기타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	기준금액의
(공통)	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이내

[※]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은 기준금액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 결론

피심인의「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